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연 월 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중증·응급의료 관련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 2)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4호 및 제5호나목”을 “제4호·제5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제25조·제26조”를 “제26조”로,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별표 제3호나목 후단 중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를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며”로 한다.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간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할 것

별표 제4호가목 중 “100분의 34”을 “100분의 38”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중 “비고 : 제3호사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

가.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중환자실병상 및 음압격리 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나. 소아 및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7. 비교

제3호사목, 제4호다목, 제5호나목 및 제6호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표 중 “6인실”을 “6인실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중 “7인실 이상” 행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2. 중환자실 장비(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의 중환자실 단위(Unit)별 보유 현황(유, 무 기재)의 장비명란 중 “심장충격기”를 “제세동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2026년 4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사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 ----- ----- ----- ----- -----제4호·제5호나목 및 제6호-----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의료인력 현황

1. 진료과목별 의사현황(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치과									
기타									

2. 간호사(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구 분	인원수	비고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으로 산정합니다.

3. 중환자실 전담인력(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구 분	의 사		비 고
	전 문 의	그 외	
중 환 자 실			
신 생 아 중 환 자 실			

※ 의사의 그 외 인력은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배치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 비교란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중환자실(Unit)을 기재합니다.